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1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 송언석·김정재·김영식

김석기 · 권명호 · 임이자

태영호 · 추경호 · 윤두현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100분 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4
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	
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	
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	
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	
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u>100분의 15(해당 금액</u>	<u>100분의 30</u>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u>30)</u>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	
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	

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 2. (생략)

⑤ ~ ⑪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⑪ (현행과 같음)